



발행일 2021년 03월 22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



현안분석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 : 역대 정부별 비교와 함의

전진영*

- 01 I. 서론
- 02 II. 국회 인사청문 대상공직과 국회의 임명동의 등의 구분 기준
- 05 III. 정부별 국회의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
- 13 IV. 결론: 비교와 함의

요약

- 2000년 국회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2021년 3월 현재까지 총 412건의 임명동의안(선출안,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 412건 중 287건(69.7%)은 행정부 공직자, 50건(12.1%)은 사법부 공직자, 75건(18.2%)은 기타 헌법상 독립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임
 -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선출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직 110건에 대한 국회의 동의율은 90%인 반면, 기타 공직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302건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비율은 77.8%였음
- 국회가 공직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비율은 문재인 정부(28.7%), 이명박 정부(23%), 박근혜 정부(14.9%), 김대중 정부(12.5%), 노무현 정부(6.2%)의 순서로 나타남
 - 사법부 공직 후보자(대법원장·대법관)에 대하여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50건 중에서 1건(2%)에 불과함
 - 행정부 공직 후보자에 대하여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비율은 문재인 정부(30.4%), 이명박 정부(27.8%), 박근혜 정부(18.7%), 노무현 정부(8.0%)의 순서로 나타남
-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수적이거나 국회가 선출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율이 기타 공직 후보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02-6788-4532
jyjeon@assembly.go.kr



I. 서론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국가기관의 주요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김대중 정부 임기 중반인 2000년에 도입된 후 20여 년간 운영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긍정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의 인사청문이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집중되면서 공직자 본인과 가족의 사생활 침해논란이 제기되고, 여야간의 갈등이 인사청문회에 그대로 투영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처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인사청문 대상 공직은 헌법에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거나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23개의 공직으로 한정되었다. 이후 인사청문 대상공직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꾸준히 확대되어서 2021년 3월을 기준으로 총 66개로 늘어났다. 헌법에 근거하는 23개 공직의 경우 국회의 임명동의 여부는 본회의 표결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구속한다. 이후 확대된 43개 공직의 경우 공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의견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청문보고서’)에 담겨 있고, 국회의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과 무관하게 임명권자는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한 이후 네 차례 정부가 교체되었는데, 매 정부마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공직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한 사례에 대해서 주로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국무위원을 비롯한 행정부 주요 기관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미채택 사례는 해당 공직이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된 이래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행정부 공직자에 대해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비율이 정부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 주목하여 이 보고서는 역대 정부별로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비율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사청문 대상공직이 행정부·사법부·헌법상 독립기관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국회가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할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에 비해서 사법부 공직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훨씬 적었고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례도 많지 않았다. 사법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높은 임명동의를 모든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인지도 이 보고서의 분석대상이다.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기존 논의는 인사청문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예컨대 공직 후보자의 사생활 침해문제나 허위진술 제재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집중되어 왔다. 그런데 인사청문제도 도입 후 20여년 동안 국회가 대통령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어떻게 기능해 왔는지를 국회 차원의 의사결정인 ‘임명동의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라는 구체적인 결과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운영상의 특징을 찾아내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국회 인사청문 대상공직과 국회의 임명동의 등의 구분기준

1. 인사청문 대상 공직의 확대

가. 2000년 인사청문제도 도입 당시

제15대 국회는 임기 말인 2000년 2월 16일에 「국회법」 제46조의3과 제65조의2를 신설하여,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였다. 제16대 국회 개원 직후(2000.6.23.)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었고,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인사청문회는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¹⁾

2000년 당시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제86조)·대법원장(제104조)·헌법재판소장(제111조)·감사원장(제98조)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13인, 국회가 선출권을 갖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등 총 23인이었다. 2003년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인사청문 대상 공직이 확대되기 이전까지 국회의 인사청문대상은 헌법상 국회가 임명동의권을 갖는 공직과 국가기관 선출권을 갖는 공직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표 1 | 2000년 국회 인사청문 대상공직

실시 주체	구분	대상 공직	합계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국회 동의대상	국무총리(후보자 포함),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13인	17
	국회 선출대상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6

※ 주: 제15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0. 2. 16), 제16대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정(2000. 6. 23.)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공직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고, 이후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회부되어 국회의 임명동의 여부가 표결로 결정되었다. 본회의 표결결과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이 부결될 경우 대통령은 다른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는 대통령의 후보자 임명에 대해 기속력을 갖고 있었다.

나. 법률 개정을 통한 인사청문 대상 공직의 확대

국회는 2003년 이후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인사청문 대상 공직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가장 최근에 청문대상에 포함된 공직은 2020년 8월에 포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며, 이에 따라 2021년 3월을 기준 시점으로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은 총 66개이다.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이 확대되어 온 경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1) 국무총리 후보자에 국회의 임명동의 제도는 제3공화국(제6대-제8대 국회)을 제외하고 제헌국회 이래로 항상 있었지만, 당시에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절차는 없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만 이루어졌다.

2003년에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총장도 인사청문 대상공직에 포함되었다.²⁾ 2005년 7월에는 국무위원을 비롯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인사청문대상에 포함되었다. 국무위원의 경우 각 정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18인이다. 2006년에는 합동참모의장, 2008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었다.

표 2 |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의 확대

도입 시기	법적 근거	대상 공직
제16대 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03. 2. 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정(2003. 2. 4.) ※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국무총리(대통령당선인 지명)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제17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5. 7. 28.), 「인사청문회법」 개정(2005. 7. 29.) ※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헌법재판소법」 개정(2005. 7. 29.)	국무위원(대통령 지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통령 임명, 대법원장지명)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 ※ 「국회법」 부칙에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2005. 7. 28.)	국무위원(대통령당선인 지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2006. 12. 28.) 「국회법」 개정(2006. 12. 30.), 「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08. 2. 2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합동참모의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8대 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12. 3.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한국은행법」 개정(2012. 3. 2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제19대 국회	「특별감찰관법」 제정(2014. 3. 18.) ※ 「특별감찰관법」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특별감찰관
	「방송법」 개정(2014. 5. 2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한국방송공사 사장
제21대 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20. 8. 1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0. 1. 14.)에 따라 인사청문 근거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2012년 제18대 국회에서는 국가의 거시경제 정책의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한국은행 총재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었고, 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었다. 2014년 제19대 국회에서는 특별감찰관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었고, 제21대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었다.

표 2의 공직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은 해당 공직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상임위원회의 청문결과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통해서 사실상 완결된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재하는 인사청문회 이후

2) 2003년 당시 해당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162056)은 “국회의 대정부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의 인사청문대상 공직을 확대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05년 국무위원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에도 ‘국회의 대정부 통제기능 강화’라는 제안이유는 동일하다.

에 위원장은 청문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리고 의장은 이를 대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 등에게 송부해야 한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는 청문보고서에 담겨 있지만, 청문보고서의 내용이나 보고서 채택여부가 대통령의 후보자 임명에 대해 기속력을 갖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국회가 후보자를 해당 공직에 부적격으로 결론내리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2.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등³⁾의 구분 기준

헌법에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거나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23개 공직의 경우 국회의 공직후보자 임명동의 여부는 본회의 표결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임명동의안(선출안)이 가결되면 국회가 공직 후보자 임명에 동의한 것이며, 부결되면 공직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 것이다.

문제는 2003년 이후 인사청문 대상으로 확대된 공직이다. 해당 공직에 대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며, 공직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절차는 없다. 이들 공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의견은 소관 위원회의 청문보고서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 청문보고서에는 후보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이 정리되어 있으며, 두 의견이 모두 병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결국 해당 공직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가 핵심인데, 이 보고서에서는 청문보고서의 채택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공직 후보자가 해당 공직에 적격자인지에 여부에 대한 의견차이가 첨예할 경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⁴⁾ 이 보고서에서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를 국회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청문보고서의 미채택을 공직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로 본다(표 31 참조).⁵⁾

한편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를 지명하기는 했지만, 임명동의안(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경우가 있었다.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지도 않은 사례는 국회의 임명동의 여부를 논의하는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사례는 이 보고서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에 일단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실시 이전에 사퇴했다라도 분석대상에 포함된다.

3) 이 보고서에서 '임명동의 등'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가결, 공직 후보자 선출안의 가결, 청문보고서의 채택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4) 노무현 정부 시기에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와 같이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경우가 한 차례 있었으며, 부적격·적격 의견이 병기되지 않고 부적격 의견만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는 드물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청문보고서의 채택여부를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의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5) 청문보고서 미채택을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학계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윤영관·김인균·강원택, 「국회 인사청문회의 임명동의 결정요인 분석: 역대 인사청문 대상자를 중심으로(2000.6-2020.2)」, 『한국정치학회보』 제54집 제2호, 2020, 최준영·전진영, 「행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결정요인: 국회는 왜 고위 공직후보자 임명에 동의하는가?」, 『한국정치연구』 제21집 제1호, 2012

|표 3|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등의 구분 기준

구분	국회의 임명동의 등의 경우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 또는 국회 선출 공직(23개)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에 대한 본회의 부결·철회
법률에 근거한 인사청문 대상공직	청문보고서 채택	청문보고서 미채택(자진사퇴·철회 포함)

청문보고서가 미채택된 경우 인사청문회 실시 이후 여야의원간에 후보자 자질과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것이 원인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청문보고서가 미채택된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개최 이전 또는 이후로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와 임명권자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경우도 포함된다.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임명권자가 지명을 철회하면 인사청문 절차가 중단된다. 후보자 사퇴나 지명철회는 청문보고서 채택가능성이 낮을 때 이루어지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청문보고서 미채택과 같은 사례로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의 임명권자가 모두 대통령인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국회가 3인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며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 선출 3인은 2000년에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국회가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해당 공직자를 선출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갖는 각각 3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에는 2005년에 와서야 인사청문 대상 공직에 포함되었고,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해당 공직에 임명이 가능하다.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갖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은 사법부 수장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견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Ⅲ. 정부별 국회의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

이 보고서는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공직을 크게 행정부 공직과 사법부 공직, 그리고 기타 헌법상 독립기관의 공직으로 구분해서 국회가 임명동의를 반대하거나 청문보고서를 미채택한 비율을 비교하였다. 행정부 공직은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무위원,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이나 금융위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한국은행 총재 등 주요 기관장 등을 포함한다. 감사원장도 대통령 소속하에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 공직에 포함시켰다. 2003년 이후 법률개정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확대된 공직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국가인권위원장과 한국방송공사 사장도 분석의 편의상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사법부 공직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포함되었다. 기타 헌법상 독립기관의 공직에는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포함된다. 이처럼 세 범주로 구분하여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해당 공직이 어떤 권력기관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인사청문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1. 김대중 정부(1998.2-2003.2)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2000년은 김대중 정부의 임기 중반이었다. 2003년 2월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직전에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이 인사청문 대상공직에 포함되었지만, 실제로 국회 인사청문이 실시된 공직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거나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23개의 공직으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에서 실시된 국회의 인사청문은 16건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2건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어서 국회가 임명동의에 반대한 비율은 12.5%라고 할 수 있지만, 사례가 워낙 적어서 다른 정부와 비교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표 4 김대중 정부 시기 국회 인사청문 결과

(단위: 건)

구분	해당 공직	합계	본회의 표결		
			가결	부결	철회
행정부	국무총리	4	2	2	0
	소계	4	2	2	0
사법부	대법관	7	7	0	0
	소계	7	7	0	0
헌법상 독립기관	헌법재판소장	1	1	0	0
	헌법재판관	2	2	0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	2	0	0
	소계	5	5	0	0
총계		16	14	2	0

자료 : 국회사무처, 「2020 의정자료집」, pp. 411-433, 2020

총 16인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중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2건만 부결되고 나머지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은 모두 가결되었다. 16건 중에서 행정부 공직자는 국무총리뿐이었다. 사례 수가 제한적이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행정부 공직자에 대하여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50%이다.

한편 사법부에 속한 공직후보자의 경우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7건이 모두 가결되어서 사법부 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율은 100%였다. 사법부 공직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높은 찬성율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특징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에 속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모두 가결되었다.

2. 노무현 정부(2003.2-2008.2)

노무현 정부의 임기는 제16대 국회 임기 마지막 해부터 시작되어서 제17대 국회 임기와 거의 겹치는 시기이다. 노무현 정부 임기 동안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이 대거 확대되었다. 2005년에 국무위원을 비롯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각 3인씩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었다.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등 공직은 김대중 정부 임기 말에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에 포함되었지만, 노무현 정부에 와서야 처음으로 인사청문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합동 참모의장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이명박 정부에 가서야 해당 공직에 대한 인사청문이 처음 실시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 국회 인사청문 실시현황 및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총 81건의 인사청문이 실시되었는데, 행정부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50건, 사법부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12건, 헌법상 독립기관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19건이었다. 이 중에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경우 1건이고, 임명동의안이 철회된 경우가 1건, 그리고 소관 위원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가 3건이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기에 국회가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미채택한 사례는 총 81건 중 5건으로 6.2%였다.

|표 5| 노무현 정부 시기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

(단위: 건)

구분	해당 공직	합계	본회의 표결			청문보고서	
			가결	부결	철회	채택	미채택
행정부	국무총리	4	4	0	0	-	
	국무위원	28	-			25	3
	기관장	15	-			15	0
	감사원장	3	2	1	0	-	
	소계	50	6	1	0	40	3
사법부	대법원장	1	1	0	0	-	
	대법관	11	11	0	0	-	
	소계	12	12	0	0	-	
헌법상 독립기관	헌법재판소장	2	1	0	1	-	
	헌법재판관	8	8	0	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	1	0	0	8	0
	소계	19	10	0	1	8	0
총계		81	28	1	1	48	3

자료 : 국회사무처, 「2020 의정자료집」, pp. 411-495, 2020.

행정부 공직자부터 살펴보면,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 4건은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28건 중에서 25건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중 3건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가 미채택되었으나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였다. 행정부의 주요 기관장 후보자 15인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모두 채택되었다.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3건 중에서 2건은 가결되고 1건은 부결되었다. 따라서 행정부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50건 중에서 4건으로, 그 비율은 8%이다.

사법부 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은 대법원장 1인, 대법관 11인 등 12인에 대해서 실시되어서 모든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기타 헌법상 독립기관 공직 후보자의 경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2건 중 1건은 가결되었지만, 1건은 후보자 사퇴로 인해 철회되었다. 헌법재판관 8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모두 가결되었다. 그리고 9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은 모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거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⁶⁾ 노무현 정부시기 중앙선거관리위원 9인 중 1인은 국회 선출 몫으로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가결되었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8인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모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따라서 헌법상 독립기관 공직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비율은 5.3%이다.

3. 이명박 정부(2008.2- 2013.2)

이명박 정부의 임기는 대부분 제18대 국회 임기와 겹치며, 이 시기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한국은행 총재 등 5개의 공직이 새롭게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이 신설되면서 청문대상 공직에 포함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5년의 대통령 임기 내내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이 인사청문 대상인 첫 정부였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은 노무현 정부의 81건에 비해서 훨씬 증가한 총 113건이었다. 이 중에서 국회가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는 26건으로, 그 비율은 23.0%이다.

이 중에서 행정부 공직자⁷⁾에 대한 인사청문은 총 79건이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4건,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54건, 그리고 주요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21건 제출되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총 4건 중에서 3건은 가결되었지만, 나머지 1건은 인사청문회 실시 후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철회되었다.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총 54건 제출되었는데, 이 중에서 40건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고, 14건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따라서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미채택율은 25.9%이며,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국무위원에 대해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미채택한 비율도 25.9%이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3인에 대해서는 선출안이 본회의 표결에 회부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각 3인의 후보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을 주관하고 청문보고서에 국회의 인사청문 의견을 담는다.

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행정부 공직자로 보기 어렵지만,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 기관장으로서 대통령이 지명하여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편의상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표 6| 이명박 정부 시기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

(단위: 건)

구분	해당 공직	합계	본회의 표결			청문보고서	
			가결	부결	철회	채택	미채택
행정부	국무총리	4	3	0	1	-	
	국무위원	54	-			40	14
	기관장	18	-			12	6
	감사원장	3	2	0	1	-	
	소계	79	5	0	2	52	20
사법부	대법원장	1	1	0	0	-	
	대법관	14	13	0	1	-	
	소계	15	14	0	1	-	
헌법상 독립기관	헌법재판소장	1	0	0	1	-	
	헌법재판관	8	3	1	0	4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0	2	0	0	7	1
	소계	19	5	1	1	11	1
총계		113	24	1	4	63	21

자료 : 국회사무처, 「2020 의정자료집」, pp. 411-495, 2020.

행정부 주요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18건 중에서 6건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이 중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실시 이후 자진사퇴하였고, 나머지 5인의 후보자는 해당 공직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3건 중 2건은 가결되고, 1건은 후보자 사퇴로 철회되었다. 따라서 행정부 공직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인사청문요청안 총 79건 중에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지 못하거나 청문보고서가 미채택된 사례는 총 22건으로, 그 비율은 27.8%이다.

사법부 공직자의 경우 총 15건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1건은 가결되었다.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14건 중에서는 13건만 가결되었지만, 1건은 본회의 표결 이전에 후보자의 사퇴로 철회되었다. 이는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20여년간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지 못한 유일한 사례이다.⁸⁾ 국회가 사법부 공직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6.7%이다.

헌법상 독립기관 공직의 경우 총 19건의 공직에 대한 임명동의안(선출안,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1건 제출되었지만, 후보자가 본회의 표결 이전에 사퇴함으로써 철회되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8인 중에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4인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가 모두 채택되었지만, 국회가 선출하는 4인 중 1인에 대한 선출안은 부결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국회 선출안 2건은 모두 가결되었지만,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8건 중에서 1건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따라서 헌법상 독립기관 공직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비율은 15.8%이다.

8) 이는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20여 년 동안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지 못한 유일한 사례이다. 반면에 인사청문제도의 모국인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관은 상원의 인준거부율이 가장 높은 공직 집단으로 손꼽힌다. 그 이유는 연방대법관이 종신직일 뿐만 아니라, 사법심사를 통해서 행정부의 정책수행을 견제하거나 대통령과 의회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CRS, "Supreme Court Nominations Not Confirmed, 1789 to the Present," CRS Report, 2010.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회의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두드러진 점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되는 공직 후보자,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 등이 임명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실시하기 전에 자진사퇴하였다는 점이다. 즉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수적인 공직 후보자 29인 중에서 5인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지 못했는데, 이 중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경우는 1건이고 나머지는 본회의 표결 이전에 후보자 사퇴로 임명동의안이 철회된 것이다.

4. 박근혜 정부(2013. 2. 25. - 2017.3.10.)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에는 특별감찰관과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었다. 박근혜 정부 임기동안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선출안, 인사청문요청안)은 총 94건이었다. 인사청문 대상 공직이 늘어났음에도 이명박 정부보다 인사청문 요청이 감소한 배경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임기가 1년여 단축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한 94건 중에서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사례는 총 14건으로, 그 대상은 모두 행정부 공직자였다. 즉 사법부와 헌법상 독립기관의 모든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는 임명에 동의하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국회가 공직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비율은 14.9%로,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낮아졌다.

행정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를 보면,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총 4건이 제출되었다.⁹⁾ 이 중 3건의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지만, 1건은 청문회 개최 이전에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인해 철회되었다.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경우 총 46건이 제출되었는데, 이 중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경우가 37건이었고, 청문보고서가 미채택된 경우는 9건이었다. 따라서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의 경우 총 후보자 50인 중에서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미채택한 사례는 10인으로, 그 비율은 20%이다.

행정부 주요 기관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인사청문요청안)은 총 24건 제출되었는데, 이 중에서 20건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4건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실시 이전에 자진사퇴하였고 나머지 후보자는 해당 공직에 임명되었다. 행정부 주요 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청문보고서 미채택율은 16.0%이다.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1건은 가결되었다. 행정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총 75건이 제출되었고, 이 중에서 14건에 대해서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회가 행정부 공직 후보자의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비율은 18.7%이다.

9)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총 7인이었다. 그러나 후보자로 지명된 7인 중에서 3인의 경우, 대통령의 지명 이후 논란이 제기되자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 기 박근혜 정부 시기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

(단위: 건)

구분	해당 공직	합계	본회의 표결			청문보고서	
			가결	부결	철회	채택	미채택
행정부	국무총리	4	3	0	1	-	
	국무위원	46		-		37	9
	기관장	24		-		20	4
	감사원장	1	1	0	0	-	
	소계	75	4	0	1	57	13
사법부	대법관	5	5	0	0	-	
	소계	5	5	0	0	-	
헌법상 독립기관	헌법재판소장	1	1	0	0	-	
	헌법재판관	3	0	0	0	3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0	3	0	0	7	0
	소계	14	4	0	0	10	0
총계		94	13	0	1	67	13

자료 : 국회사무처, 「2020 의정자료집」, pp. 411-495, 2020.

행정부 공직자와 달리 사법부 공직자나 헌법상 독립기관 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및 청문보고서 채택율은 모두 100%였다. 사법부 공직자의 경우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5건 모두 가결되었다. 헌법상 독립기관의 경우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1건이 가결되었고,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채택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3인에 대한 선출안이 가결되었고, 6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도 모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5. 문재인 정부(2017. 5. - 현재)

문재인 정부는 2021년 3월 현재 1년여 정도의 임기가 남아 있는데, 임기 중에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된 공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유일하다. 2021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총 108건의 임명동의안(선출안,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중에서 31건에 대해서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미채택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국회가 공직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미채택한 비율은 28.7%이다.

|표 8|에는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가 나타나 있다. 행정부 공직자의 경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2건 제출되어서 모두 가결되었다.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52건 제출되어서 36건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지만, 16건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청문보고서가 미채택된 16건 중에서 5건의 경우 후보자가 사퇴하였고, 11건은 후보자가 해당 공직에 임명되었다.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비율은 29.6%이다.

행정부 주요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총 24건이 접수되었다. 이 중에서 16건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고, 8건의 경우에는 청문보고서가 미채택되었다. 청문보고서가 미채택된 경우에도 후보자는 모두 해당 공직에 임명되었다.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1건 제출되어서 가결되었다.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주요 기관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미채택율은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미채택율보다 높은 32%였다. 국무위원과 주요 기관장 등 행정부 공직자에 대해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미채택한 비율은 30.4%이다.

사법부 공직자의 경우 대법원장 1인과 10인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모두 가결되어서 국회의 임명동의율은 100%이다. 국회의 사법부 공직 후보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임명동의율은 모든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표 8 | 문재인 정부 시기(2021년 3월 1일까지) 국회 인사청문 결과

(단위: 건)

구분	해당 공직	합계	본회의 표결			청문보고서	
			가결	부결	철회	채택	미채택
행정부	국무총리	2	2	0	0	-	
	국무위원	52	-			36	16
	기관장	24	-			16	8
	감사원장	1	1	0	0	-	
	소계	79	3	0	0	52	24
사법부	대법원장	1	1	0	0	-	
	대법관	10	10	0	0	-	
	소계	11	11	0	0	-	
헌법상 독립기관	헌법재판소장	3	2	1	0	-	
	헌법재판관	9	3	0	0	1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6	1	0	0	4	1
	소계	18	6	1	0	5	6
총계		108	20	1	0	57	30

자료 : 국회사무처, 「2020 의정자료집」, pp. 411-495, 2020.

헌법상 독립기관 공직자를 보면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임명동의안 3건 중 2건은 가결되었지만, 1건은 부결되었다. 또한 국회가 추천권을 갖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은 모두 가결되었지만,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4인 중에서 1인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채택되었고 1인은 자진사퇴, 2인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6인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 1건은 가결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1건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가 미채택되었고 나머지 4건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었다. 결과적으로 헌법상 독립기관 공직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미채택한 비율은 38.9%이다. 이는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IV. 결론: 비교와 함의

1. 역대 정부별 비교

2000년에 국회가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2021년 3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선출안, 인사청문요청안)은 총 412건이었다. 이 중에서 287건(69.7%)이 행정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었다. 사법부 공직자(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50건(12.1%), 헌법상 독립기관 공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75건(18.2%)이었다.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의 3분의 2이상은 행정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412건의 사례 중에서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미채택한 비율은 18.9%(78건)이었는데, 공직이 속한 기관에 따라서 그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즉, 행정부 공직 후보자의 경우 23%, 사법부 공직 후보자의 경우 2.0%, 헌법상 독립기관 공직 후보자의 경우 14.7%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청문보고서가 미채택되었다(표 9 참조).

표 9 | 역대 정부별 국회가 공직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미채택한 비율

시기	전체	행정부			사법부	헌법상 독립기관
		전체	국무총리·국무위원	기관장·감사원장		
김대중 정부	12.5% (2/16)	50% (2/4)	50% (2/4)	-	0% (0/7)	0% (0/5)
노무현 정부	6.2% (5/81)	8.0% (4/50)	9.4% (3/32)	5.6% (1/18)	0% (0/12)	5.3% (1/19)
이명박 정부	23.0% (26/113)	27.8% (22/79)	25.9% (15/58)	33.3% (7/21)	6.7% (1/15)	15.8% (3/19)
박근혜 정부	14.9% (14/94)	18.7% (14/75)	20% (10/50)	16.0% (4/25)	0% (0/5)	0% (0/14)
문재인 정부 (2021. 3.1 현재)	28.7% (31/108)	30.4% (24/79)	29.6% (16/54)	32.0% (8/25)	0% (0/11)	38.9% (7/18)
합계	18.9% (78/412)	23.0% (66/287)	23.2% (46/198)	22.5% (20/89)	2.0% (1/50)	14.7% (11/75)

주 : 국회가 공직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미채택한 비율 하단의 괄호 안의 수는 (임명동의안 부결 및 사퇴와 청문보고서 미채택 사례 수/인사청문 대상공직 사례 수)를 의미함

역대 정부별로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28.7%, 이명박 정부 23%, 박근혜 정부 14.9%, 김대중 정부 (12.5%), 노무현 정부 6.2%의 순으로 국회가 공직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다만 김대중 정부의 경우 인사청문 대상 공직에 국무위원을 비롯하여 주요기관장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인사청문이 실시된 사례가 16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다른 정부와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에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인사청문보고서가 미채택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행정부 공직 후보자였다. 행정부 공직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거

나 청문보고서가 미채택된 비율은 김대중 정부(50%)를 제외하고 볼 때, 문재인 정부(30.4%)가 가장 높고, 이명박 정부(27.8%), 박근혜 정부(18.7%), 노무현 정부(8%)의 순서이다. 행정부 공직을 국무총리·국무위원과 주요 기관장(감사원장 포함)으로 구분해서 보면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무총리·국무위원보다 주요 기관장에 대해 청문보고서가 미채택된 비율이 더 높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모든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사법부 공직후보자에 대한 높은 임명동의율이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다섯 정부에서 총 50건이 제출되어서 49건이 가결되어서 98%의 임명동의율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제출된 대법관 임명동의안 1건만이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철회된 바 있다. 한편 다른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헌법상 독립기관 소속 공직 후보자가 행정부 공직 후보자보다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청문보고서 미채택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미채택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전체 412건의 분석대상 중에서 헌법에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된 23개의 공직에 해당되는 사례는 110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한 사례는 11건이었다. 따라서 임명동의율은 90%이다. 반면 302건의 인사청문요청안 중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는 235건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율은 77.8%이다. 이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수적이거나 국회가 선출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율이 기타의 공직 후보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의미한다.

2. 함의

국회가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한 중요한 목적은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20여년간 인사청문제도가 운영되어 오면서 인사청문과정에서 주로 논란이 된 공직 후보자는 행정부 소속 공직 후보자였다. 실제로 이 보고서의 분석 결과 사법부나 헌법상 독립기관 공직 후보자에 비해서 행정부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일각에서 국회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에 초점을 맞춰서 ‘국회 인사청문제도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 행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인데, 헌법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국회가 선출하도록 한 23개의 공직 이외의 공직, 예컨대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 인사청문 결과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구속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¹⁰⁾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운영되어 오면서 공직 후보자의 직무적격성이나 전문성보다 도덕성 검증에 집중되고,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사청문제도의 긍정적인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개적인 인사청문 과정은 국민들에게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존재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해 국민적인 눈높이를 확인하고, 공직 지망생에게 이를 주지시키는 학습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10) 서울대학교 국가리더십 연구센터, 「대통령 리더십과 인사청문회 자료집」, 2017

국회 인사청문제도 시행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회 인사청문제도 운영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인사청문제도가 그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
- * 국회사무처, 『2020 의정자료집』, 2020.
 - * 서울대학교 국가리더십 연구센터, 「대통령 리더십과 인사청문회 자료집」, 2017.
 - * 윤영관·김인균·강원택, 「국회 인사청문회의 임명동의 결정요인 분석 : 역대 인사 청문 대상자를 중심으로(2000.6-2020.2)」, 『한국정치학회보』 제54집 제2호, 2020.
 - * 전진영,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운영을 둘러싼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1335호, 2017.
 - * 최준영·전진영, 「행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결정요인: 국회는 왜 고위 공직후보자 임명에 동의하는가?」, 『한국정치연구』 제21집 제1호, 2012.
 - * 전진영·김선화·이현출,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2009.
 - * CRS, “Supreme Court Nominations Not Confirmed, 1789 to the Present,” CRS Report, 2010.

※ 인터넷 사이트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 국회 회의록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record/>>
- * 미국 상원, “Cabinet Nominations Rejected, Withdrawn, or No Action Taken”(최종검색일: 2021.3. 2.)
<<https://www.senate.gov/legislative/NominationsRejectedorWithdrawn.htm>>

R E P O R T · L I S T

NARS 현안분석 발간 일람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189호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	2021.3.10	이덕난 유지연
제188호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2021.2.22	이수환
제187호	대형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 - ②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주요 현안 -	2021.1.4.	강지원 최은진
제186호	우리나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과 개선과제	2020.12.31.	유웅조
제185호	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쟁점과 과제는? - ② 주요쟁점별 입법·정책방안 제언 1 -	2020.12.31.	박재영
제184호	국제바칼로레아(IB) 운영 현황 및 국내 도입을 위한 과제: 고등학교 교육과정(IB DP)을 중심으로	2020.12.31.	조인식
제183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주요 특징과 향후과제	2020.12.31.	정민정 김예경
제182호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	2020.12.30.	김준현
제181호	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쟁점과 과제는? - ① 벤처기업 성장과 의결권(議決權)주식 -	2020.12.29.	박재영
제180호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시행 현황과 향후 과제	2020.12.17.	김리사
제179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경과 및 향후과제	2020.12.16.	김진선
제178호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현황과 과제	2020.12.10.	정준화 신용우 권성훈
제177호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의 유의점과 개선방향	2020.12.9.	박선권
제176호	대형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 - ① 국가자금 투입과정 및 방식 검토 -	2020.12.2.	김경신 이수환
제175호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중심으로	2020.11.20.	최진웅
제174호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	2020.11.18.	서은철

제190호

NARS

현안분석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
: 역대 정부별 비교와 함의

